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운영 내규

2023년 2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문화예술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문화예술학과 수업 참여교수들은 문화예술학과 박사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대학원 학칙 제2조의 교육목적을 준용하여 ‘문화예술학의 기초 및 응용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제5조 (과목개설) ① 교과목은 학과공통, 전공선택, 연구필수로 구분하여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필수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필수이수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③ 교과목은 전공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으로 개설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학과 내 개설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기 당 6~8개의 교과목을 개설하며, 교육과정 및 입학 기준 학기별 이수과정을 고려하여 순환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① 교·강사 배정에서 수업 참여교수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는 유관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 분야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참여 교·강사별 안식 학기를 시행하여 교·강사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①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연구 방향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지도교수 1인에게 한 학기당 2명 이내의 지도학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정년퇴임 3년 이내의 자로 하며, 정년퇴임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공동 지도교수(내부 또는 외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1조의2를 준용하여 위촉한다.

제8조 (지도교수의 변경)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대학원 학칙 제37조 ④에 따라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① 종합학력시험(전공 자격시험)은 응시자의 이수 교과목 중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개설한 4개 과목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② 출제자는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며,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과목별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합격점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 전임교원이 개설한 교과목 부족으로 ①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지도교수의 과목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①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전 과목 성적 9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자, 혹은 종합학력시험(전공 자격시험) 시행일 전까지 학생을 주저자로 하고 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등재한 논문의 경우에만 종합학력 시험을 면제한다.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한하며 국제학술지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문화예술학과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는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전까지, 다음과 같이 종합학력시험(전공 자격시험) 면제조항을 적용한다.

1. 학생을 주저자로 하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 학생을 주저자로 하고 지도교수가 인정한 공동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3.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제외) 및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에 한한다.
4. 논문 1편당 2과목의 종합학력시험이 면제되며, 2편까지 제출할 수 있다.
5. 사사 표기는 단국대학교로 한한다.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 제11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① 논문 예비발표 신청 예정자는 예비발표 해당 학기의 직전 또는 이전 학기 중 학과에서 운영하는 연구계획서[논문 프로포절(proposal)]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②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용을 수록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1. 문헌 분석 중심의 이론 연구 : 연구 논문의 제목(부제가 있는 경우 부제 포함), 연구 논문의 목차, 연구 목적(필요성)과 연구 범위,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연구방법(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틀 포함), 예상되는 결과 및 참고문헌
 2. 실증 분석 중심의 경험 연구 : 연구 논문의 제목(부제가 있는 경우 부제 포함), 연구 논문의 목차, 연구 목적(필요성)과 연구 범위, 선행연구의 검토 및 조사 설계(조사방법 및 설문지 포함), 예상 되는 결과 및 참고문헌
- ③ 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학생, 수업 참여교원, 유관 분야 전임교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과 세미나(또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참가교수들의 심사 결과를 수정·보완 한 이후 학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한 발표자는 차기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연구계획서 발표는 매 학기 종강 이전(6월 초, 12월 초)에 시행하며, 전공학점을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제12조 (논문의 예비발표 및 심사)**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의 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제10조 ②항을 따름)을 게재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② 연구계획서 심사과정을 통과한 예비 논문심사 신청 예정자일지라도 제1항에서 규정한 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예비발표 및 최종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예비발표일 현재 게재 확정된 학술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등재지의 발행기관장 직인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논문 지도교수와 함께 심사신청 이전에 학과 예비발표를 통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예비발표 시 논문의 완성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될 경우, 주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발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 문화예술학의 범주를 벗어난 주제로 전공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정한 경우
 2.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논문의 구성 체계, 내용 체계, 분량 등)에 현저히 미비한 경우
 3. 예비발표 참여교수 및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정한 경우
- ④ 예비발표 신청자는 제11조와 제12조 ①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심사일 10일 전까지 예비발표 신청서(학과 구비 양식), 등재지 게재논문 별쇄본(조건부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과 함께 박사학위청구 예비발표 논문을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임교수는 신청자가 제11조와 제12조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도교수는 예비발표 심사 논문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④ 지도교수는 심사일 10일 전 주임교수에게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전원에게 예비발표 7일 전까지 심사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예비발표 심사는 주임교수의 관리 하에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전임교원)이 참석하여 진행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 논문심사의 진행) ① 예비발표를 통과한 박사학위청구논문 신청자의 논문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내부 심사위원 3인은 우리 대학 소속 교원 중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심사위원 2인은 내부 심사위원의 자격과 동등한 자로 한다.

③ 최종 논문심사의 진행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7장 수업 참여교수 및 운영위원회

제14조 (수업 참여교수) ① 주임교수는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 유관 전공자 10~15인의 수업 참여교수를 위촉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전임교원 중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적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수업 참여교수는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 및 해당 교과과정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③ 수업 참여교수로 위촉된 전임교원은 학과에서 의뢰한 종합학력시험의 출제와 평가 의무가 있으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내부 심사위원 및 논문(공동)지도교수 등의 위촉에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제15조 (학과 운영위원회) ① 우리 대학 전임교원 및 특별교원 중 유관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된 5~9인의 학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포함)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문화예술학과 박사학위과정의 개설 목적을 유지·계승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학과 운영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주임교수가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주임교수는 학과 운영위원회를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학과의 학사 조교는 학과 운영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 (준용) 본 운영 내규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칙(2023. 02. 16.)

제1조 (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이 운영 내규는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며 적용한다.